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12. 16 선고 2019가단2896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환, 김수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

변론 종결 2020. 10. 21

판결 선고 2020. 12. 16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0,518,096원과 이에 대한 2018. 3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내연관계로 만난 사이이다.

피고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피고의 배우자인 D이 대표이사로등기되어있다.

피고의 친구인 E은 2013. 7.경 자신의 명의로 'F'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,원고는 2013. 7.경 위 F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.

그 후 원고는 2014. 1. 17. 'G'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,2014. 12. 1. 'H'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, 2016. 5. 27.경 이를 폐업하였다(이하 'G'와 반을함께 가리켜 'G 등'이라 한다).

원고는 G 등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, 7, 13, 21호증 및 을 제5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증인 I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의 부탁에 따라 G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 등 직원들 4대 보험료로 32,005,070원,G 등 자재구입대금으로 62,513,026원을각 지출하였고,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6,000,000원을 G 등 경비로 사용하였는바,G 등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위 110,518,096원을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원고가 G 등을 운영할 때 피고가 업무나자금관리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G 등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이상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갑 제4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원고 명의의 G 등 계좌로 금원이 지속적으로 송금되어 온 사실, G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주식회사 C과 G 등 운영과 자금관리가 일부 분리되지 않았던 사실은

인정되나,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,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G 등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J, 먼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(오히려 증인 J, E의 각 일부 증언에 따르면, 원고가 G 등에서 영업을 한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), 을 제9, 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(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는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, 원고는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이라고 주장한다),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G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단지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,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 등의 운영에 참여한 바 있다거나 주식회사* C와 G 등의 경영이 일부 분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G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당연히 구상할 수 있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백지예